제30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총 무 과

구미시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안

발의연월일	2026. . .
발 의 자	박윤경 의원 외 1인

구미시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안

(박윤경 의원 대표 발의)

의 안 번 호	

발의연월일 : 2026. . .

발 의 자 : 박윤경·장세구 의원(2인)

찬 성 자 : 강승수·김영태·김재우·김정도 김종화·김지식·김춘남·유승헌 이탕모·장진호·전희정 의원(11인)

1. 제안이유

구미시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고,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원사업 및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 안전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.

2. 주요내용:

가.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～제2조)

나.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(안 제3조～제4조)

다. 지원계획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(안 제5조～제6조)

라.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
3. 조례안: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1) 「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, 제4조

2) 「자치경찰사무와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」 제2조

3) 「지방자치법」 제12조, 제13조, 제28조

나. 부서검토: 총무과 의견제출(붙임)

다.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(붙임)

구미시 조례 제 호

구미시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구미시의 특성과 구미시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자치경찰사무”란 「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제2호 및 「자치경찰사무와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」 제2조에 따른 자치경찰사무를 말한다.
2. “자치경찰사무 협력 공무원”이란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구미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지정하는 구미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.

제3조(시장의 책무) 시장은 시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.

제5조(지원계획) ① 시장은 지역 치안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다음

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에 관한 계획(이하 “지원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
1. 자치경찰사무 활성화를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
2. 자치경찰사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
3.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
4. 그 밖에 시장이 치안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·시행할 때에는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고, 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.

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·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미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6조(지원사업) 시장은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순찰 및 범죄 예방시설 운영·유지관리, 주민참여 범죄예방활동 지원, 안전사고·재해·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
2. 실종예방·대응,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 보호, 성폭력 예방, 아동·여성·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·청소년 분야 사업
3.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·관리, 안전교육·홍보, 통행 제한·허가, 교통법규위반 단속, 통학차량 점검,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안전 분야 사업
4. 가정폭력·아동학대·노인학대·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

원 및 연계,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

5. 그 밖에 시장이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7조(협력체계 구축)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구미경찰서, 구미시의회, 구미교육지원청, 구미소방서 등(이하 “관계기관”이라 한다)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협력체계를 운영하기 위하여 시장은 자치경찰사무 협력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.

③ 관계 기관 간 업무 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법령

□ 「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

제2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제4조(경찰의 사무) ① 경찰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

1. 국가경찰사무: 제3조에서 정한 경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. 다만, 제2호의 자치경찰사무는 제외한다.
2. 자치경찰사무: 제3조에서 정한 경찰의 임무 범위에서 관할 지역의 생활안전·교통·경비·수사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무

가.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

1) 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및 시설의 운영

2) 주민참여 방범활동의 지원 및 지도

3) 안전사고 및 재해·재난 시 긴급구조지원

4) 아동·청소년·노인·여성·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업무 및 가정폭력·학교폭력·성폭력 등의 예방

5)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 및 그 위반행위의 지도·단속. 다만,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행정청의 사무는 제외한다.

6) 그 밖에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

나. 지역 내 교통활동에 관한 사무

1)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지도·단속

2) 교통안전시설 및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심의·설치·관리

3)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 및 홍보

4) 주민참여 지역 교통활동의 지원 및 지도

5) 통행 허가,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, 긴급자동차의 지정 신청 등 각종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무

6) 그 밖에 지역 내의 교통안전 및 소통에 관한 사무

다.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 관리

라.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사사무

1) 학교폭력 등 소년범죄

2) 가정폭력, 아동학대 범죄

3) 교통사고 및 교통 관련 범죄

4) 「형법」 제245조에 따른 공연음란 및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2조에 따른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에 관한 범죄

5) 경범죄 및 기초질서 관련 범죄

6) 가출인 및 「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 관련 수색 및 범죄

② 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

항 및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·도조례로 정한다.

③ 제1항제2호라목의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**「자치경찰사무와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」**

제2조(생활안전·교통·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등) 「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4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 등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"시·도"라 한다)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지켜야 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법 제3조에 따른 경찰의 임무 범위와 별표에 따른 생활안전, 교통, 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범위를 준수할 것
2. 관할 지역의 인구, 범죄발생 빈도 등 치안 여건과 보유 인력·장비 등을 고려하여 자치경찰사무를 적정한 규모로 정할 것
3. 기관 간 협의체 구성, 상호협력·지원 및 중복감사 방지 등 자치경찰사무가 국가경찰사무와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사항을 포함할 것
4. 자치경찰 사무의 내용은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데 효율적인 것으로 정할 것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12조(사무처리의 기본원칙) ① 지방자치단체는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조직과 운영을 합리적으로 하고 규모를 적절하게 유지하여야 한다.

③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을 위반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없으며, 시·군 및 자치구는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시·도의 조례를 위반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.

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지방자치단체의 구역, 조직, 행정관리 등

 가. (생 략)

 나. 조례·규칙의 제정·개정·폐지 및 그 운영·관리

 다. ~ 카. (생 략)

2. 주민의 복지증진

 가.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

 나. ~ 차. (생 략)

3. ~ 7. (생 략)

제28조(조례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

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.

검 토 의 견 서

부서명: 총무과

조 례 명	구미시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안

□ 검토 사항

○ 근거 법령

▪ 「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 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

▪ 「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(경찰의 사무)

□ 주요 사항

○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시의 행·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(안 제3조)

○ 생활안전, 여성·청소년, 교통안전, 범죄피해자 보호 등 자치경찰사무 관련 사업의 지원(안 제6조)

○ 구미시·시의회·경찰서·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(안 제7조)

□ 검토 결과

○ 조례 제정을 통해 자치경찰사무 관련 사업에 대한 행·재정적 지원 및 관계기관 간 실무협력체계 구축을 제도화할 수 있음

○ 다만, 자치경찰사무는 시·도의 소관 사무로, 시 차원의 별도 조례 제정 필요성 및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검토가 요구됨

□ 조례 제(개)정에 따른 향후

○ 기대효과: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사업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 마련으로 지역 맞춤형 안전 강화

○ 소요예산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
○ 문 제 점: 해당사항 없음

구미시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안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요인

○ 조례안 제6조에 따라 시에서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○ 「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2호

(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)

3. 미첨부 사유

○ 지원사업에 대한 사항을 “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”고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업에 대한 지원금액 범위를 예측하기 어려움

4. 작성자

○ 총무과 자치행정팀 김원찬(☎054-480-6767)